

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 
제1차환경노동위원회

#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배출 온실가스 목표의 평가·공개〉  
■ 김영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617호)

2024. 9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배출 온실가스 목표의 평가·공개 ..... | 2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
| 1.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.....               | 5 |

## I. 제안경위

2024년 6월 19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,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,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,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제31조제2항).

### III. 검토의견

#### 1. 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배출 온실가스 목표의 평가·공개

개정안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).

#### [ 개정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1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<br>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1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<br>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야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하고,<br>이를 평가·공개하여야 한다. |
| ③ ~ ⑧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현행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과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은 지국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장기

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<sup>1)</sup>, 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,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점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해 보임.

2023년 수정된 ‘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’(참고자료1)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52.1백만톤(CO<sub>2</sub>eq)대비 32.8% 감소한 35백만톤으로 감축해야 하며, 민간 공동주택 등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
다만, 국토교통부는 안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<sup>2)</sup>이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<sup>3)</sup>에 따라 일

---

1)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2030년까지의 목표(4.7만건)를 제시한 바 있고, 매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, 녹색건축인증 등의 녹색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관 녹색건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. 2024년 9월 기준으로 녹색건축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증 848건, 예비인증 1,393건 등 총 2242건이 등록되어 있음.

2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0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”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
3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(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)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
2.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

부 신축 및 녹색건축으로 인증받은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, 다른 방법으로 이미 규제 중인 신축 건물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그러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별 목표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, 적용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는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등을 통해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평가·공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, 구체적인 평가방식,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533 |

- 
- 3.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
  - 3의2.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
  - 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
  - 5.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

## 참고 1

##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

### < 부문별 감축목표 >

(단위: 백만톤CO<sub>2</sub>e, 괄호는 '18년 대비 감축률)

| 구분      | 부문                 | 2018 실적 | 2030 목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감축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기존 NDC ('21.10) | 수정 NDC ('23.3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출량(합계) |                    | 727.6   | 436.6 (40.0%)   | 436.6 (40.0%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출      | 전환                 | 269.6   | 149.9 (44.4%)   | 145.9 (45.9%) <sup>1)</sup> | - 전원믹스 재구성(석탄↓, 재생e↑ 등)<br>- 전력시장 개선 등 수요 효율화      |
|         | 산업                 | 260.5   | 222.6 (14.5%)   | 230.7 (11.4%)               | - 공정 효율화, 연·원료 전환<br>-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|
|         | 건물                 | 52.1    | 35.0 (32.8%)    | 35.0 (32.8%)                | - 제로에너지건축, 그린리모델링<br>- 건물 효율개선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수송                 | 98.1    | 61.0 (37.8%)    | 61.0 (37.8%)                | - 무공해차·선박 보급<br>- 내연차 기준강화, 주행거리 감축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농축수산               | 24.7    | 18.0 (27.1%)    | 18.0 (27.1%)                | - 저탄소 농축산업 기술 보급<br>- 설비 효율화·저탄소화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폐기물                | 17.1    | 9.1 (46.8%)     | 9.1 (46.8%)                 | - 폐기물 원천감량<br>-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수소                 | (-)     | 7.6             | 8.4 <sup>2)</sup>           | - 그린수소 실증 및 인프라 구축<br>- 수소 활용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탈루 등               | 5.6     | 3.9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흡수 및 제거 | 흡수원                | (-41.3) | -26.7           | -26.7                       | - 산림·습지 보호·복원<br>-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대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CCUS <sup>4)</sup> | (-)     | -10.3           | -11.2 <sup>3)</sup>         | - 근거법 제정 및 상용화 R&D<br>- CCS 저장소 확보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국제감축               | (-)     | -33.5           | -37.5 <sup>4)</sup>         | - 국외 감축활동 수행 후 크레딧 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) 태양광,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

2)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(블루수소 +10.5만톤 → 온실가스 0.8백만톤↑)

3) 국내 CCS 잠재량 반영(0.8백만톤),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(0.1백만톤)

4) CCUS(Carbon capture and storage) : 탄소 포집·활용·저장 기술

5)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